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1 선고 2023가단502777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심

담당변호사 이관우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이삼(123)

담당변호사 심재훈

변론 종결 2024. 8. 30.

판결 선고 2024. 10. 11.

주 문

-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9. 8. 23.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중 226,602,628원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 광주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 피고는 원고에게 105,397,3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연대보증채권의 발생 및 채권양도

- 1) D중양회는 2006. 12. 29.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하고,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는 생략한다)과 여신한도금액 10억 원, 여신만료일 2007. 12. 29., 지연배상금률을 연 18%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E에 같은 돈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2) F종교단체 G연구원은 2013. 1. 3. E의 D중양회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인수하였고, C, H은 같은 날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13억 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 3) D중양회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순차로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각 채권양도의 통지 등 대항요건을 갖추었다.

D중양회	I	2013. 6. 5.	2013. 6. 27.경	1,000,000,000
I	J 유한회사	2013. 6. 26.	2013. 6. 27.경	1,000,000,000
J 유한회사	K	2017. 6. 16.	2017. 7. 7.경	292,125,903
K	원고	2021. 8. 26.	2021. 12. 10.경	506,338,045

- 4) K는 2017. 10. 26. 연대보증인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902246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2. 5. 'C은 K에게 315,265,630원 및 그중 274,398,978원에 대하여 2017.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2017. 12. 23.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5)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의 잔액은 2019. 8. 23. 기준으로 406,471,339원[= 위 지급명령에 따른 315,265,630원 + 추가 발생 지연손해금 91,205,709원(원금 274,398,978원 ×

674일(2017. 10. 19. - 2019. 8. 23.)/365 × 18%,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4. 8. 27. 기준으로 653,237,271원(= 원금 274,398,978원 + 이자 378,838,293원)이다.

나.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1) C은 2019. 7. 22. 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5809호로 L에게 약정금 332,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광주지방법원 2019카합50363호로 L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L는 위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하여 광주지방법원 2019금7276호로 332,000,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2) C은 2019. 8. 23. 피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권리인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대한민국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105,397,372원을 배당금으로 지급받았고, 나머지 226,602,628원(= 332,000,000원 - 105,397,372원)은 지급되지 않고 남아 있다.

다. C, L 사이의 합의서

한편, C은 2019. 1. 28. L와 재단법인 M의 운영권 및 그 소유 부동산, N 중·고등학교 등의 양도와 관련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생략)

합의함에 있어 편의상 C을 갑이라 칭하고, L를 을이라 칭하면서 아래사항에 합의하다.

- 아래 -

1. 현재 재직 중인 교사와 행정직은 그대로 인수인계 받기로 한다.

(단 행정직 5명 중 1명은 갑이 책임지고 퇴직시키기로 한다)

2. 을은 합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갑에게 합의금 25억을 지불하기로 한다.

(합의금 25억 중 기지급 합의금 7억 원을 포함 추가로 5억 원을 지불함으로써 합계금 12억 원을

합의금으로 지불하고, 갑의 채무금 O조합 대출금 3억 원을 을이 책임지면서 총 합의금으로 15억

원을 지불된 것으로 합의하고, 갑과 을이 2019년 2월 11.일 O조합를 방문하여 갑의 조합 채무금(3억

원)을이 승계한다.

(생략)

3. 합의잔금 10억 원 중

① 1차로 2019년 6월 30.일까지 3억 원을 을이 보관하되, 아래사항의 모든 재판이 끝나 판결이 완결되면 갑의 요구로 을은 조건 없이 지불한다.

① P 1억 7천만 원 재판 중, ② Q 퇴직금 8천만 원 재판 중

③ N 교직원 퇴직금 5천만 원 별도(R의 보험료는 을이 승계)

② 2차로 2019년 8월 31.일 4억 원을 지불한다.

③ 3차로 2019년 10월 31.일 3억 원을 지불한다.

4. 전남 보성군 S의 교사와 실내체육관 기초공사비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2억 1천만원과 학교에 급여로 빌려준 1억 2천 2백만 원 합계 3억 3천 2백만 원을 2019년 4월 중으로 지불한다.

5. 합의 전재단법인 M의 부채가 있다면 갑이 책임을 진다.

7. 상기사항에 합의하면 갑은 법인과 학교의 운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8. 잔금이 정리되고 합의가 완성되면 합의 목적물과 재단법인 M 관련 모든 권한은 을에게 전부 인계된다(갑의 지분 부동산 50%를 을에게 2019년 8월 31.일까지 중도금 일부 4억 원을 지불하면 등기 이전한다). 단, 합의기간 전이라도 합의금이 모두 지급되면 갑의 모든 권한은 종료한다.

10. 전남 보성군 T 교사 실내체육관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관련 권리사항 일체를 갑은 을에게 승계한다.

라. 재단법인 M, C, L 사이의 조정조서

한편, C은 재단법인 M(대표자 L)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음에도 재단법인 M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재단법인 M를 상대로 매도대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이후 C와 재단법인 M 사이의 광주지방법원2021나59891(본소) 건물인도, 2021나59907(반소)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에서 2022. 4. 2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조정조항

1. 조정참가인 L와 재단법인 M는 연대하여 C에게 556,480,000원을 지급하되, 2회로 분할하여 2022. 5. 31.까지 300,000,000원, 2022. 6. 30.까지 256,480,000원을 각 지급한다.
만약 위 L와 재단법인 M가 위 각 분할금 지급의무를 1회라도 지체하면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에 대하여 지체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재단법인 M, 조정참가인 L는 C 명의의 O조합 채무를 인수한다.
 3. 재단법인 M, 조정참가인 L, C은 진행 중인 모든 소송(위 L와 C 사이, 재단법인 M와 C 사이)을 상호 취하하고, 위 L가 C을 상대로 한 고소도 취하한다. 다만 재단법인 M, 조정참가인 L와 C 사이에 확정된 판결(현재 진행 중인 청구이의 소송 포함)은 별도로 한다.
 4. C이 위 1항 기재 돈을 지급받으면 재단법인 M, 조정참가인 L, C은 상호간에 2019. 1. 28.자 합의를 포함하여 이 사건 법인, 학교와 관련된 어떠한 민, 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5. 이 사건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 11, 14, 15, 24, 27호증, 을1, 4,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그 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추었다더라도 채권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장애사유가 될 수 없는바(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582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C에 대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전인 2013. 1. 3. 성립하였으므로, 원고가 2021. 8. 26.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을 양수하여 2021. 12. 10.경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 1) 법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는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책임재산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어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다는 사실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등 참조).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나아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또는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어떠한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없는 등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 역시 취소채권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다237804 판결 참조).

2) 사해행위 당시 무자력 여부 가) C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18, 19, 20, 24호증, 을8,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일인 2019. 8. 23. 당시 C은 아래와 같이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채무내역]

1	전남 보성군 U 학교용지 7,084㎡ 중 2분의 1 지분	17,500	61,985,000	558,800,0003)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수익자인 피고에게 양도되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목적물이 된 이 사건 공탁금 채권은 제외함이 상당하다.	
2	위 V 학교용지 416㎡ 중 2분의 1 지분	17,500	3,640,000		
3	위 W 학교용지 78㎡ 중 2분의 1 지분	18,300	713,700		
4	위 X 학교용지 582㎡ 중 2분의 1 지분	17,500	5,092,500		
5	위 Y 학교용지 283㎡ 중 2분의 1 지분	17,500	2,476,250		
6	위 Z 임야 595㎡ 중 2분의 1 지분	405	416,500		
7	위 AA 임야 96,793㎡ 중 2분의 1 지분	1,400	155,000,000		
8	전남 보성군 AB에 있는 AC호 집합건물			114,000,0004)	
합계	248,924,533	672,800,000			

1) 2019. 5. 31. 기준.

2) 토지가액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1/2

3) 558,800,000원(= 채권자 재단법인 M에 대한 가압류채무 200,000,000원 + 채권자 AD조합에 대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58,800,000원)

4) 채권자 AE조합에 대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14,000,000원, 다만 채권자 K에 대한 가압류채무 315,265,630원은 아래 [부동산 관련 이외의 채권채무내역] 순번 5에 기재하였다.

[부동산 관련 이외의 채권·채무내역]

1	대여금(금전소비대차)	AF	150,000,000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9512 판결 및 공증인가 법무법인 AG 증서 2017년 제167호
---	-------------	----	-------------	--	--

1	대여금(금전소비대차)	AF	150,000,000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9512 판결 및 공증인가 법무법인 AG 증서 2017년 제167호
2	공사대금	P		217,690,9315)	광주지방법원 2020가합13305 판결
3	이 사건 공탁금	C	332,000,000		별지 목록 기재 채권
4	모텔 매매대금	C	45,000,000		광주지방법원 2022. 7. 12. 선고 2021가단515314
5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	K		406,471,339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19. 8. 23. 기준으로 확정 지급명령에 따라 산정한 금액
합계	377,000,000	774,162,270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가합13305 공사대금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금액인

190,865,217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1.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일인 2019. 8. 23.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금액(= 190,865,217원 × 1,026일/365 × 5%)이다.

[C의 자동차 보유 내역]

1	2013년식 승용에쿠스(차량번호 1 생략)	19,294,000	
2	영업용차량(차량번호 2 생략)	20,000,000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상 자동차기재(명칭, 연식 등)가 없어 명확한 차량가액의 산정이 어려우나, 위 2013년식 승용에쿠스 차량가액과 지방세액으로 비추어 볼 때 영업용차량 또한 약 20,000,000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합계	39,294,000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합의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C이 L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에서 지급받기로 한 25억 원 중에서 기지급된 1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3억 원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설령 이 사건 합의가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C, L 사이에는 민사·형사상 법적 분쟁이 이루어져 온 점, 이 사건 합의서는 2019. 1. 28. 작성되었는데 그 이후 5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하기까지 C이 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2. 4. 20. L와 사이에 L로부터 재단법인 M와 연대하여 556,48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되 이 사건 합의를 포함하여 기타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정이 성립하였는바, 이 사건 조정의 취지는 C, L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포함한 기존의 채권·채무관계를 소멸시키고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새로운 내용의 권리·의무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없는 등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적극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 피고는, C이 재단법인 M에 대하여 신축건물 건축비 및 건물 리모델링 비용 등 명목의 611,225,95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2018. 4. 11. 재단법인 M로부터 611,225,950원의 채무확인서를 작성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① 위 건물이 재단법인 M의 정관 변경을 통해 기본재산에 편입된 점, ② 전남 보성군 T 지상 실내체육관 교사 등을 신축하는데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등 재단법인 M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합의 제5항에 '합의 전 재단법인 M의 부채가 있다면 C이 책임을 진다.'라고 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없는 채권으로 보이므로 적극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는, C이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된 이후인 2023. 3. 10. 재단법인 M 및 L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의 기재(을6호증)에 따라 C이 L에 대하여 492,876,178원의 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나, 그 내용은 앞에서 이미 인정한 C이 P에 대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공사대금 상당의 구상금 채권, 모텔 매매대금 채권 등과 대부분 중복되고, 그 외에 을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C이 재단법인 M 및 L에 대하여 위 492,876,178원의 채권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C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일인 2019. 8. 23. 당시 적극재산으로 665,218,533원(= 부동산 248,924,533원 + 부동산 외 채권 377,000,000원 + 자동차가액 39,294,000원), 소극재산으로 1,446,962,270원(= 부동산 관련 채무 672,800,000원 + 부동산 외 채무 774,162,270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또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3) 변론종결시 무자력 여부 가) C의 부동산 처분행위

다툼 없는 사실, 갑25, 26호증(가치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변론종결 당시에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C이 보유하는 적극재산 중 전남 보성군 V, X, AA의 각 1/2 지분의 가액은 50,000,000원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는 2022. 4. 13.경 C 소유의 전남 보성군 V, X, AA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카단10365호로 청구금액 50,000,000원, 채권자 원고로 된 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이라 한다)을 받았고, 같은 날 가압류결정등기가 마쳐졌다.

○ C은 2024. 4. 18.경 L에게 전남 보성군 V, W, X, Y, Z, AA에 관한 2분의 1 지분을 112,442,400원에 매도하고, 2024. 5.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C이 처분한 위 부동산들의 2024.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부동산 가액은 아래와 같다.

1	전남 보성군 V 학교용지 416㎡	19,900	8,278,400	원고 가압류
2	위 W 학교용지 78㎡	20,400	1,591,200	
3	위 X 학교용지 582㎡	19,900	11,581,800	원고 가압류
4	위 Y 학교용지 283㎡	19,900	5,631,700	
5	위 Z 임야 595㎡	2,680	1,594,600	
6	위 AA 임야 96,793㎡	454	43,944,022	원고 가압류
합계		72,621,722		

○ 위 부동산 가액을 기초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가압류가 등기된 위 순번 1, 3, 6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을 계산하면 원8,278,400, 11,581,800, 43,944,022원(가압류액과 40%의 권리액)은 804,002,900원이므로 결국 C의 위 부동산 처분행위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및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액 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는 그 처분행위가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C의 변론종결 기준 재산 내역

위 인정사실 및 다툼 없는 사실, 갑8 내지 11, 24, 27호증, 을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4. 8. 30. 기준으로 C은 아래와 같이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적극재산

1	부동산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액	50,000,000
2	부동산 이외 채권8)	전남 보성군 U 학교용지 7,084㎡ 중 2분의 1 지분	207,467,3007)
전남 보성군 AB에 있는 AC호 집합건물			
모텔 매매대금		45,000,000	
3	자동차	2013년식 승용에쿠스(차량번호 1 생략)	19,294,000
영업용차량(차량번호 2 생략)		20,000,000	
합계		341,761,300	

소극재산

1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	653,237,271	2024. 8. 27. 기준 원금 274,398,978원, 이자 378,838,293원
2	AE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101,508,000	을15호증, 제4면
3	AF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채무	220,653	갑24호증, 제6면
4	P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23,775,746	을15호증, 제3면
합계	778,741,670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이 사건 조정에 따라 L, 재단법인 M에 대하여 556,480,000원의 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나, 갑2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조정에 이른 경위는 C이 재단법인 M에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음에도, 재단법인 M가 부동산매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상호간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조정이 이루어진 사건의 제1심에서 '매도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재단법인

M가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자, 위 사건의 제2심에 이르러 L가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하여 재단법인 M와 연대하여 C에게 매도대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분쟁을 마무리 하고자 한 것인데, 위와 같이 이 사건 조정이 이루어지기까지 C, 재단법인 M, L 사이에 분쟁이 계속 존재하였고, 이 사건 조정이 이루어진 이후 현재까지도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채권의 지급을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위 556,480,000원의 채권은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없는 등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적극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소결론

이 법원 변론종결일인 2024. 8. 30. 기준으로 C의 적극재산은 341,761,300원, 소극재산은 778,741,670원이므로 C은 여전히 무자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변론종결시 자력을 회복하여 책임재산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사해행위 여부 및 C의 사해의사에 대한 판단 C은 2019. 8. 23.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처분하여 채무자의 총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하였고, C의 무자력 상태가 이 법원 변론종결일인 2024. 8. 30.까지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므로 C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가 되고, C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행위 당시 선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이 증명할 책임이 있는 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통하여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로써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과 친인척 관계가 아니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할 때 C의 채무상태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었다고 항변하나,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을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법리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원상회복 방법으로는 제3채무자로부터 아직 채권을 추심하지 않은 때에는 양수인인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면 된다. 그러나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된 때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105,397,372원을 배당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226,602,628원(= 332,000,000원 - 105,397,372원)은 지급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이미 지급받은 배당금에 대한 가액배상으로 105,397,372원을 반환해야 하고, 나머지 226,602,628원에 대하여는 그 배당금출급청구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3) 소결론 C과 피고 사이에 2019. 8. 23.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중 226,602,628원에 대한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광주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05,397,3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강수정

별지

가액으로, 다툼 없는 사실 및 을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24. 4. 23. 당시 C 소유의 각 부동산 가액 합계액이 319,909,7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C이 위와 같이 L에게 매도한 각 부동산의 가액은 112,442,400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2024. 8. 30. 기준으로 C이 소유하고 있는 각 부동산의 가액은 207,467,300원(= 319,909,700원 - 112,442,400원)이라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수익자인 피고에게 양도되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목적물이 된 이 사건 공탁금 채권은 제외함이 상당하다.